

우04427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46길 37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6575/전송(02)790-6581
보험국 국장 김기성[6574] 보험급여팀장 고영옥[6572] 팀원 조시형[6575]/E-mail : kma6571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1217호

시행일자 2023. 5. 4.

수 신 각 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, 각 학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과 개원의협의회장

참 조

제 목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환자 환급안내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약관리부-860호(2023. 5. 3.)

3.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별도의 환급계약을 통해 제약사와 위험을 분담하는 위험분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전액본인부담 환자가 해당 약제를 투여 받은 후 제약사에 환급액 반환을 요청할 경우 제약사는 공단과 계약한 동일한 내용으로 환자에게 약값의 일부를 환급토록 하고 있습니다.

4. 이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본인부담 환자의 환급대상 약제가 **신규 및 추가계약**되어 변경내용을 안내하고, 해당 위험분담계약 약제를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방(또는 조제)시 환자에게 제약사로부터 해당 약값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함께 해당 약제 환급 담당자의 연락처 및 청구방법 (**항코드를 U항 / 건강보험 100분의 100 본인부담**)을 안내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온 바, 이를 전달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위험분담계약 약제 및 환급 담당 연락처 1부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